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843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김경우, 고병국, 권영희,
김기덕, 김화숙, 오현정,
유 용, 이영실, 이정인,
이준형, 이호대, 임종국,
전석기, 정지권, 정진술 의원
(15명)

1. 주 문

-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등록대상동물)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 대상동물의 범위)에서 동물등록대상을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로 규정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의 등록이 배제되고 있는 바,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개 이외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 동물등록 누락 최소화와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 동법 제12조(등록 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의무자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2019년 서울시민 반려동물 보유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8년

서울시 반려동물을 기르는 유형은 반려견(88.9%~84.9%)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반려묘(8.6%~12.2%)를 기르는 가구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서도 개(36.2%)뿐만 아니라 고양이(47.2%)도 지역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개 75.4%, 고양이 23.5%, 기타 1.1%로, 운영비용은 23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조된 유기 동물 중 고양이와 기타(토끼 등)동물의 비중이 25%에 육박하며, 버려진 고양이에 대한 학대와 토끼 등 유기 동물에 의한 문화재 훼손과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 실제로 전국적으로 사람에게 의해 훼손된 고양이의 사체들이 발견되는 등 유기된 고양이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가 멈추지 않고 있고, 경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총 575건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토끼의 경우 번식력이 강해 늘어나는 개체수의 관리를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별도의 사육장을 만든 상황이며, 몽촌토성의 경우 유기된 토끼들이 파놓은 굴로 인해 토성이 훼손되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이 토끼에게 먹이를 주면서 음식물쓰레기 등이 공원 곳곳에 남아있게 되어 악취와 함께 환경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 이렇듯 유실·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의 단계부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서울의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바, 조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의 등록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동물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4. 이송처

-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반려동물 천만시대, 최근 1인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만큼 버려지고 학대받는 등 비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관리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시·군·구)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 2019년 서울시민 반려동물 보유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8년 서울시 반려동물을 기르는 유형은 반려견(88.9%~84.9%)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반려묘(8.6%~12.2%)를 기르는 가구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서도 개(36.2%)뿐만 아니라 고양이(47.2%)도 지역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개 75.4%, 고양이

23.5%, 기타 1.1%로, 운영비용은 23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조된 유기 동물 중 고양이와 기타(토끼 등)동물의 비중이 25%에 육박하며, 버려진 고양이에 대한 학대와 토끼 등 유기 동물에 의한 문화재 훼손과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 실제로 전국적으로 사람에게 의해 훼손된 고양이의 사체들이 발견되는 등 유기된 고양이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가 멈추지 않고 있고, 경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총 575건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토끼의 경우 번식력이 강해 늘어나는 개체수의 관리를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별도의 사육장을 만든 상황이며, 몽촌토성의 경우 유기된 토끼들이 파놓은 굴로 인해 토성이 훼손되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이 토끼에게 먹이를 주면서 음식물쓰레기 등이 공원 곳곳에 남아있게 되어 악취와 함께 환경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 이렇듯 유실·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의 단계부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 사업이 2018년부터 서울의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바, 조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반려동물 천만시대, 즐거운 반려생활을 위해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의 등록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동물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